

#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

2024.12.19(목)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 및 동법 감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합니다.

- [붙임] 1. 지배구조 내부규범  
2.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[붙임] 2.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(안) 신규대비표 (1/3)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4조(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)</b></p> <p>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규정에 명시된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 <p>9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·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</li> <li>2.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</li> <li>3.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</li> <li>4. 경영성과, 분석 및 현황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 <p>5.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④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「결의사항 등」의 제·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.</p>	<p><b>제4조(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)</b></p> <p>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규정에 명시된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<b>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</b></li> <li>10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·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11. <b>회사의 책무구조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b></li> </ol> <p>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</li> <li>2.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</li> <li>3.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</li> <li>4. 경영성과, 분석 및 현황</li> <li>5. <b>내부통제 등 관리조치의 내용 및 결과와 관리조치 수행 중 알게 된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사항 등</b></li> <li>6.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</p> <p>④ <b>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.</b></p> <p>⑤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「결의사항 등」의 제·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.</p>
<p><b>제9조(이사회내위원회)</b>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사위원회</li> <li>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</li> <li>3. 보수위원회</li> <li>4. 위험관리위원회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<b>제9조(이사회내위원회)</b>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사위원회</li> <li>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</li> <li>3. 보수위원회</li> <li>4. 위험관리위원회</li> <li>5. <b>내부통제위원회</b></li> </ol> <p>② ~ ④ (현행과 동일)</p>

[붙임] 2.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(안) 신규대비표 (2/3)

현 행	개 정 (안)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4조 (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)</p> <p>① 내부통제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,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</p> <p>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</li> <li>2.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 마련</li> <li>3.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</li> <li>4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</li> <li>5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조치와 보고 수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·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요구</li> <li>6. 그 밖에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
제14조~제34조	제15조~제35조
<p>제35조(경영진의 자격요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6조(경영진의 자격요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경영진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, 업무경험,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</p>
<p>제36조(권한과 책임)</p> <p>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.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각자 대표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회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운영(사장이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)</li> <li>2. 주주,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</li> <li>3.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 역할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 <p>5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</p> <p>②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37조(권한과 책임)</p> <p>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.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각자 대표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회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운영(사장이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)</li> <li>2. 주주,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</li> <li>3.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 역할</li> <li>4.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 <u>무수행 역할</u></li> <li>5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</li> </ol> <p>②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하며,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동일)</p>
제37조 ~ 제59조	제38조 ~ 제60조

[붙임] 2.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(안) 신규대비표 (3/3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60조(정기공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0.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·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</p> <p>11.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1조(정기공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내부통제위원회 활동 내역</p> <p>11.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·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</p> <p>12.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
<p>제61조 ~ 제71조</p>	<p>제62조 ~ 제72조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부칙(15)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범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p>